간호학교의 학교제도상 위치 및 그 발전책

청주간호학교 양 인 실
최 현 자

Ⅰ. 서 언

간호학교는 현 학제상 각종학교에 속하고 있다.

일반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고등실업전문학교,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 기관은 마치 부유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 밑에 자녀 마냥 항상 행정기관(문교부)의 사전 배려 즉 법적 지위 확보가 선행 또는 병행되면서 발전하여 온데 비하여 간호학교는 이해심 없는 부모 밑에 자녀 마냥 많은 세월동안 제대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점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대학이 사범학교로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시킬때 간호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생으로 받았으며 1962년 교육대학이 사범학교에서 승격하여 초급대학 과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받을 때 간호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생으로 받아 실제로 3년제 대학과정으로 2년 과정인 교육대학에 비하여 1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3년제 대학과정으로 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학교로 전락되고 법적 뒷받침을 얻어 정규학교 계열에든 교육대학 보다 항상 밑자리에서 학생이나 교수가 대우를 받아 온 것이다.

1962년 간호학교수는 19개교로 그당시 10개교인 교육대학 보다 거의 배의 학교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규 학교 계열에 들지 못함은 문교행정 당국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간호학교 행정가 또 교육자의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무관심에 더 큰 원인이 있겠다.

1970년 1월 1일 법 2175호로 개정된 교육법에 의하면 전문학교가 정규 학교 계열에 신설되고 경희간호학교와 서울간호학교가 간호전문학교로 개편됨에 따라다른 24개 간호학교도 크게 자극을 받고 앞으로 서야할 우리의 자세를 가늠하게 되었다.

각종 학교로서의 푸대접과 소외감을 뼈저리게 느껴온 간호학교 앞에 정규 계열의 전문학교는 커다란 매력을 주고 있음이 사실이나 여기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간호학교가 가야할 길의 모색을 위해서 간호학교가 지금 서있는 학제상의 위치와 간호학교가 정규 학교 계열에 들어서는 방법으로서 초급대학으로 들어가는 길과 전문학교에 들어가는 두 길을 놓고 그 방법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간호학교의 학제상 위치

1949년 12월 31일 법률 86호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법(81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교계열은 표 1과 같다.

표 1. 우리 나라 학교 계열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규학교계열
2. 사범학교, 사범대학,	
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5. 특수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간호학교의 전신이던 간호고등기술학교는 세

번째 학교 계열인 고등기술학교에 속했으며 교육대학의 전신인 사범학교는 두번째 계열인 사범학교에 속했다.

1962년부터 간호고등기술학교는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수준을 맞추려는 욕구에서 모두 그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승격시켰다.

사범학교도 국민학교 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62年부터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으로 승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을 입학생으로 맞았다.

간호학교와 교육대학이 같은 해에 중등학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승격됐지만 그 학교 계열에서 교육대학은 그대로 정규학교계열에 자리잡는데 비하여 간호학교는 정규 학교 계열에서 그 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각종학교로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표 2 참조)

표 2. 우리 나라 학교계열(현재)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정규학교계열
2. 교육대학 ※1 사범대학	
3. 실업고등전문학교※2, 전문학교※3	
4.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 치 원	
8. 각종학교	

※ 1. ※ 2. 1963. 8. 7. 법률 1387호
※ 3. 1970. 1. 1. 법률 2175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교육대학은 승격하기까지 집합된 의견이 문교부와의 합의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았다.

1955년 10월부터 문교부에서는 교육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에 사범교육분과 위원회를 두어 교육대학 설치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957년 8월 중앙교육위원회에서는 2년제 교육대학 설치요령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양성제도를 바꾸자는 노력끝에 1961년 초급대학령이 공포되고 시도적으로 광주와 부산에 2년제 초급사범대학을 설치했으며 1961년 9월 1일 법률 708호로 혁명정부가 제정 공포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서 "초등교육은 국공립의 2년제 교육대학에서 양성한다"(동법제 6 조)에 따라 1962년 3월 1일부터 교육대학이 설치되었고 1963년 8월 7일 법률 1387에 의하여 표 2 처럼 두번째 학교계열에 사범학교에 대한 법규대신 교육대학에 대한법규로 바뀌게 되었다.

다른 한편 간호학교는 집합된 의견대신 각 간호학교가 개별적으로 학교의 승격을 요구하여 195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에게 입학을 허락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기 시작하였으나 교육과정이 3년이었으므로 그 당시 정규 학교 계열중 대학으로 들기에는 1년이 모자라고 초급대학으로 들기에는 1년이 초과되어, 정규학교 계열에 들기에는 학제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간호학교로의 승격은 간호고등기술학교의 개별적 욕구에서 시작됐을 뿐이고 그 욕구가 하나로 집합되고 문교부와 협의하여 3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까지는 가지 못했다

1961년 이후 모든 간호고등기술학교는 그시설 설비에 따라 불비한 곳은 폐교 처분되고 그 남어지는 전국적으로 간호학교로 승격발전을 보았지만 간호학교의 규정은 1965년에야 제정되었으니 1958년 간호학교로 처음 승격된 때로부터 7년 후에야 간호학교 규정이 나온 셈이다.

간호학교와 교육대학이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까지 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학교 : 학교승격에 대한 학교별 욕구
↓
학교별로 문교부에 승격 신청
↓
각종학교에 속하는 간호학교로 승인됨 (1958~1961년)
↓
간호학교 규정 초안작성 : 간호교육심의위원회 (1965년)
↓
간호학교 규정개정(각종학교) (1965년)

교육대학
학교 설치에 대한 논의
문교부내 교육특별심의 위원회(1955년)
중앙 교육위원회(1957년)
↓
초급대학령 공포(1961년)
↓
2년제 초급사범대학시도(1961년) (광주와 부산에)
↓

법률제정 :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년)
↓
교육대학으로 승격(1962)
↓
법률개정 : 교육법 개정(1963)

Ⅲ. 정규학교 계열으로의 모색

간호학교가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된지 14년째가 되는 오늘까지 정규학교 계열을 찾지 못하고 그모색을 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크다.

간호학교는 1962년 현재 19개교 1332명의 학생으로 그 당시로도 충분히 정규학교 계열에서 독립할만한 교세였으나 간호학교들이 뭉쳐서 법적 보장을 위한 논의를 못했고 문교부 당국역시 간호학교의 위치를 위한 특별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각종 학교로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70년 현재 간호학교는 25교, 5,136명의 학생을 갖고 있으며 정원으로 보면 6,150명에 이르고 239명의 교직원과 기타 직원 152명을 갖고 있다.

문교부가 발행한 문교 통계연보를 보면 1966년이래 문교부 기구표 속에 간호학교가 독립되어 나와 있고, 1967년 이래 간호학교는 고등교육기관 현황속에서 각종학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초급대학 현황, 교육대학현황, 대학현황, 대학원 현황과 마찬가지로 간호학교 현황으로서 구분되어 나와 있다. 이 처럼 간호학교는 실제적인 면에서 독립시켜 놀만큼 성장되고 있고 6천여명의 간호학교 학생 권익을 위해서도 이제 정규학교 계열에 들어서야 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규학교 계열에 들어서느냐는 방법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 방법으로 초급대학에 드는 방법과 전문학교에 드는 두 방법을 제안한다.

두 방안을 말하기 전에 초급대학과 전문학교와 간호학교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초급대학 전문학교 간호학교의 비교

학교 / 내용	초급대학	전문학교	간호학교
1. 교육목적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각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 및 간호기술을 교수 연구하며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업연한	2 년	2~3년	3 년
3. 입학자격	고졸이상 대학입학 예비고사합격자(단 예능학과 체육학과는 제외)	고졸이상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불문	고졸이상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불문
4. 수업일수	210일 이상	210일 이상	210일 이상
5. 교원배치 기준(이하학생360명 9학급 기준)	학장외 19명교원(조교논 제외)	교장외 19명의 교원(조교는제외)	교장외 18명의 교원(조교는제외)
6. 사무직원	5 명	5 명	5 명
7. 도서관사서	2 명	2 명	
8. 시설기준			
① 교사의 기준	6,479평방미터 (1,960평)		4,488평방미터
② 체육장	4,959평방미터 (1,500평)	8,400평방미터	4,554평방미터
③ 도서관	○열람실 정기간행물, 서고 사무실을 갖출 것 ○열람실 좌석 54석 ○도서장서 7,200권학술잡지 3종	○도서실	○도서실 99평방미터 (단 120명 명기준)

내용 \ 학교	초 급 대 학	전 문 학 교	간 호 학 교
9. 동계학교진학	가능함	문교부에서 마련 하는 국가고시에서 60점 이상 얻으면 편입가능	학교별로 학력인준을 얻으면 편입가능 단, 대학입학 예비고사 제이후(1969) 곤란하게 됨
10. 졸업후 교수진출	교수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연구·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수로 진출할 자격이 생긴다.	초급대학과 같음	교수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아야만 교수진출이 가능하다. 단, 학력인준을 받으면 초급대학과 같음.
11. 교재연구비	교수 및 부교수 20,000원 조교수 및 전임강사 16,000원	18,000원 12,000원	초급대학과 같음
12. 기관장의 호봉	특2호 1급	특2호 2급	특2호 2급
13. 학교계열	정규학교 계열	정규학교 계열	각종학교 계열

1. 간호 초급 대학

간호학교를 초급대학의 위치에 놓으려면 크게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현제 3년제 간호학교 과정을 1년 단축시켜 2년제 초급대학이 되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3년제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3년제 초급대학이 되는 방법이다.

a. 2년제 간호 초급대학이 되는 방안

현 학교제도로서 초급대학이 2년 과정이므로 여기에 맞추어서 3년 간호학교 과정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간호학교 규정을 보면 간호학교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이고 교양과 전공의 시간 비율은 1 : 4이며 전공과목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이 임상간호 실습 및 실험 실습시간이어야 한다.

문교부령 교과과정 안을 분석해 보면 3년간 총 수업시간 3,856시간중 임상 간호 실습 시간이 1,872시간으로 전체의 49%이므로 3년 과정중 거의 1년반은 임상실습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전문 간호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임상실습은 꼭 받아야 되겠지만 임상실습은 학교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에서 해야하므로 학교에서의 강의를 중심으로 약간의 임상실습을 하면서 2년동안 학교 교육을 마치고 간호원 국가고시는 1년간의 인턴 과정을 각자 병원에서 지낸다음 응시할 수 있도록 보건 사회부의 고시령을 고친다면 2년제 초급대학이 가능하겠다.

b. 3년제 간호초급대학이 되는 방안

현 3년제 간호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지니면서 초급대학의 계열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교육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3년제 간호초급대학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

개정해야 할 법률	현행 법률내용	개 정 안
교육법 제110조	대학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2년 2. 대학 4년 내지 6년	대학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2년 내지 3년 2. 대학 4년 내지 6년
교육법 시행령 제115조	(의과대학 등의 수업년한) ① 의과대학(한의과대학과 수의과 대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치과대학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하고 의학과와 치의학과를 4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예과의 교육과정은 종합대학에 있어서는 문리과대학에서 관장한다.	(의과대학, 간호초급대학 등의 수업년한) ① ②은 변동없음 ③ 간호초급대학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c. 간호초급대학의 문제점

① 입학자격

간호학교 입학자격은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당락을 불문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됐으나 초급대학이 되는 경우 대학 예비고사의 합격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데 과연 정원미달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대학의 경우에도 예능학과와 체육학과는 대학 예비고사의 합격을 불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런 예외를 간호초급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② 문교부의 인가

간호학교 폐지 인가 신청과 초급대학 설립 인가 신청을 문교부로 부터 받아야 한다.

문교부는 초급대학의 신설을 억제하는 반면 전문학교의 신설을 장려하고 있어 초급대학 설립 인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겠다.

③ 3년제 초급대학으로서 적절한 대우

3년제 초급대학은 2년제 초급대학과 4년제 대학사이에 있으므로 3년제 초급대학의 학생이나 교수는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 되어야할 것이다. 이 문제는 3년제 간호전문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2. 간호 전문학교

현재 문교부에서는 초급대학의 설치를 억제하는 반면 전문학교의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간호학교로 변경하기는 비교적 쉬우리라 믿는다.

전문학교는 초급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받아 2년간 교육시키지만 간호전문학교는 대통령에 의해서 3년으로 못 박혔으며 입학생의 자격이 초급대학처럼 대학 예비고사 합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수 자격은 초급대학, 교육대학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연구수당에 있어서는 초급대학 교육대학보다 10~25%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초급대학의 대우를 받는 간호학교로서는 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격상이냐 격하냐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간호학교가 정규학교 계열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3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이 2년과정의 교육기관 보다 못하는 격하의 쓴잔을 마셔야 할지 그렇치 않으면 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3년제 전문학교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할지는 앞으로 간호계 학교의 관심인 동시에 간호계의 관심이겠다.

간호전문학교는 대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과정이므로 그특성을 살려 몇가지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3년제 간호전문 학교를 위한 기본적 법률 개정안

법 률	현 행 내 용	개 정 안
교육법 제127조의 7 (수업년한)	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단, 간호전문학교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그 특성을 살려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한다.
교육법 제128조의 9 (졸업자의 대학편입학)	전문학교의 졸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고시를 거쳐 동계대학(해당학과에 한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학교의 졸업자 중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간호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이 3년인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게 아니라 교육법으로 분명히 하여야 그에 마땅한 여러가지 법적 보장을 받을수 있다. 그렇치 않으면 2년제 전문학교와 같은 대우를 받기쉽다.

전문학교는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여부에 관계 없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시켰지만 예비고사 불합격자만을 뽑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예비고사에 합격한 졸업생은 검정시험을 치루지 않고도 대학 편입학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생활기반이 닦아진후 자기 적성에 따라 또는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40세, 50세 또는 60세가 넘어서도 대학진학을 할수 있다. 꼭 동계 대학 진학만으로 한정

시키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나리라 믿는다. 혹시 전문학교 졸업후 대부분의 졸업생이 다른 계통 대학에 진학할까 염려한 때문이겠으나 경과를 보아 염려할 정도로 다른 계통으로 진학이 많다면 그때 논의하여 법을 고칠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한 걸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27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2) 3년제 간호전문학교를 위한 보수적 법률 개정

이상 교육법중 두개 조항의 개정은 3년제 간호 전문학교를 위한 필수기본적인 법적 보장이며 이 이외 뒷받아야할 법적 보장이 많다.

전문학교와 실업전문학교는 그 목적은 비슷하나 그대상 학생의 성숙정도 교육경험의 정도가 다르고 교육과정이 다르다. 전문학교는 초급대학과 같은 정도인 고등교육과정이며 실업고등전문학교는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학교 과정이 한데 있는 것이므로 학교시설 설비기준등이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전문학교에서도 2년제 전문학교와 3년제 간호전문 학교는 그수업년한과 대상학생의 성이 다르므로 학교시설 설비와 졸업후 졸업생에 대한 대우와 교수에 대한 대우에서 차이가 있어야할 것이다.

예컨데 학교시설 설비로서 체육장의 평수, 교사등의 기준이 전문학교는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와 같게되어 있는데 ※1전문학교는 대학설치 기준령 ※2을 따르는 초급대학과 같은 기준인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또한 간호전문학교는 여자 대학과 같은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학교 체육장은 12학급을 기준으로 9,6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자 대학 기준을 따르면 1,000명 미만의 학생을 기준으로 약 5,000평방미터(1,500평)이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교재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 1971년 4월이래 전문학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와 같은 액수를 지급받고 있어 초급대학보다 10~25% 적은데 이는 수정되어 전문학교는 초급대학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욱실을 부린다면 3년제 간호학교는 초급대학과 대학의 중간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할것이다.

IV. 제 언

간호학교는 지금 갈림길에서있다. 간호전문학교로 갈것이냐? 간호초급대학으로 갈것이냐? 각종학교로서 간호학교의 길을 그냥 갈것이냐?

우리가 어떤길을 택하든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다.

간호전문학교의 길도 간호초급대학으로의 길도 간호학교의 길도 간호계 학교의 길인 이상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드라도 서로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하는 것이 우리 간호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일이겠다.

우리는 아직 간호학교의 길을 그냥 걷고 있지만 우리 동료 간호학교중 몇은 이미 간호전문 학교라는 미개척의 길을 향해 떠났고 그길 앞에는 커다란 벽랑이 놓여 있다.

3년제 간호전문학교에 대한 교육법 시행령은 2년제 전문학교와 달라야 하며 2년제 초급대학 보다도 격상에 놓여야 한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초급대학은 그졸업생의 대우 즉 일반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계산이나 교수가 될 자격의 하나로써 필요한 연구 교육 경력연수가 다르고 또 교수의 대우(연구수당등)가 대학과 초급대학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요한 이유는 수업년한이 길고 짧은데 있다고 본다. 대학은 초급대학보다 수업년한이 길고 따라서 학문의 깊이가 더하기 때문이라면 3년제 간호전문학교는 4년제 대학보다는 덜 대우 받드라도 2년제 초급대학인 교육대학보다는 더 대우를 받아야 할것이다.

전문학교에 대한 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교육법 시행령에서 3년제 간호전문학교의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것이며 이런 노력은 한두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없으며 우리 간호계학교 내지 간호협회에서 중심되어 만든 "간호교육 심의위원회"같은 조직을

※1.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1969. 12. 4 대통령령 4398호
※2. 대학설치 기준령 〃 〃

특해서 간호일선학교의 의견이 충망라되고 종합되어 문교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제언하고 싶다.

1965년 1월부터 문교행정의 자문기관으로 과학교육 심의위원회 제4분과로 간호교육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간호학교 규정 초안, 양호 교사문제, 기타 간호학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컸으나 현재는 해산되고 없다.

간호교육 심의위원회에서는 급한 업무로 간호전문학교에 관한 교육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문교부와 협의하고 간호학교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간호고등기술학교와 3년제 간호학교 또는 간호전문학교와 4년제 간호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안을 만들어 일선학교의 방향감을 돕고 문교행정에 긴요한 자료 제공 내지 문교행정개선에 뒷받침이 되게하며 기타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고 협의하는 일을 해야할 것이다.

간호전문학교가 간호학교(초급대학과정)의 장점과 전문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현재 전문학교가 초급대학보다 낮은 점을 보충한다면 문교부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간호전문학교로 변경신청을 낼 것이다. 이처럼 전문학교의 격을 초급대학과 같이하고 3년제 간호전문학교는 2년제 전문학교보다 격을 높이는데는 문교행정 당국이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우리 간호계 학교의 움직임이 요청된다 하겠다.

◇ ◇ ◇

참 고 문 헌

1. 김헌규 "교사의 자질과 교원양성제도 유형과의 관계" 교육학 연구 8권 1호, 한국교육학회, 1970
2.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62, 서울 : 문교부, 1962
   〃 〃 1963 〃 , 1963
   〃 〃 1964 〃 , 1964
   〃 〃 1965 〃 , 1965
   〃 〃 1966 〃 , 1966
   〃 〃 1967 〃 , 1967
   〃 〃 1968 〃 , 1968
   〃 〃 1969 〃 , 1969
   〃 〃 1970 〃 , 1970
3. 양인실, 한국간호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69
4. 이귀향, "한국간호교육변천에 관한 연구"대한간호, 4권 3호, 대한간호협회, 1965.
5. 이영복, 간호사, 서울 : 수문사, 1968.
6. 장기욱, 조규향편, 문교법전 1970년판, 서울 : 교학사, 1970.
7. 정범모, 교육학, 서울 : 배영사, 1968.
8. 최상순,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의 문제점"대한간호, 10권 2호, 대한간호협회, 1971.
9. 기 타
   대한민국정부, 관보 1948년~1970년

독간호원 교육

대한 간호협회 서울시 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간호원 교육을 실시한다.

독간호원 취업을 원하시는 분의 많은 수강 신청을 바란다.

접 수 처 : 서울시 지부 (52—0490)

접수마감 : 7월 10일

수 강 일 : 7월 19일—24일